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 기본정보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울산명성복지재단(대표이사 오병호)		
시 설 명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최현정)	전 화	052)286-7111
설치일자	2004.11.05	팩 스	052)286-7118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51명
입소대상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1,2등급, 3,4,5등급(시설급여)		
모집방법	- 방송매체, 인터넷, 신문 등을 활용한 모집활동을 할 수 있다. - 내방상담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모집활동을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시설직원에게 모집인원을 배당하는 등의 모집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면 적	A동 2,264.46㎡(지상3층), B동 1,290.79㎡(지하1층, 지상3층)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만료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등급 갱신일 후 재계약 함. 입소자 및 보호자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자동연장된 것으로 봄.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로 구분<표준약관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은 1명 이상 정하여야 하며, 시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어르신에 대해 발생하는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신원을 인수인계할 책임이 있음.

5) 계약의 해제

입소자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함. 시설의 계약 해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통고함. 단. 나)와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고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음.

가) 시설이용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 입소자의 건강 및 증세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라)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마)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내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처리절차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고시에 따라 변경한다.

2) 비급여대상 비용에 대한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논의 후 결정한다.

나)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바로 안내한다.

3)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소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4.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시설은 전항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다음 각호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함.

가)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질병, 부상, 기타 의사 진단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병원치료비 및 간병비 등

나) 입소자의 요청에 따라 연1회 이상 건강검진 시 드는 비용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

료서비스를 제공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

3) 사전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음.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입소자의 진료는 월 2회 이상 협력병원의 계약의사가 진료한다.

2)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과 가장 가까운 119 구조대 및 인근 응급실을 갖춘 병원에 신속히 이송한다.

3)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 시설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입소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7. 시설물 이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는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해서는 안되며,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할 수 없을 때는 시설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8.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 중 시설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시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개인적 조치 때문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2) 입소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3) 시설과 그 직원의 과실에 의한 입소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또한,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함.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table>
<tr><td colspan="5">계약당사자</td></tr>
<tr><td rowspan="4">이용자
(갑)</td><td>성 명</td><td>(인)</td><td>등 급</td><td>등급</td></tr>
<tr><td></td><td></td><td>인정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연락처</td><td>자택)</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기 타</td><td colspan="3">☐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td></tr>
<tr><td rowspan="3">제공자
(을)</td><td>시설명</td><td>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td><td>시설종류</td><td>노인요양시설</td></tr>
<tr><td>시설장 성명</td><td>최 현 정</td><td>연락처</td><td>052)286-7111~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울산 북구 덕곡길 47(천곡동)</td></tr>
<tr><td rowspan="3">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td><td>성 명</td><td>(인)</td><td>관 계</td><td>‘갑’ 의 (　　)</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연락처</td><td>자택)
이동전화)</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able>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갑' 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입금계좌 : 신한 100-032-615717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④ '갑' 또는 '병'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 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30일 기준)

1) 장기요양등급별 비용

등 급	월 한도액	구 분	법정본인부담	식사재료비	합 계
1등급	2,527,200원 (84,240원/일)	일반(20%)	505,440원	243,000원	748,440원
		감경(12%)	303,270원	243,000원	546,270원
		감경(8%)	202,170원	243,000원	445,170원
		국민기초 수급권자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2등급	2,344,500원 (78,150원/일)	일반(20%)	468,900원	243,000원	711,900원
		감경(12%)	281,340원	243,000원	524,340원
		감경(8%)	187,560원	243,000원	430,560원
		국민기초 수급권자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3등급	2,214,000원 (73,800원/일)	일반(20%)	442,800원	243,000원	685,800원
4등급		감경(12%)	265,680원	243,000원	508,680원
		감경(8%)	177,120원	243,000원	420,120원
5등급		국민기초 수급권자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비급여 항목별 비용

NO.	비급여 항목	산출근거(일・월)	금액(1식/일)	금액(30일)	비 고
1	식사재료비	2,700원(1식)*3식	2,700원(1식)	243,000원	8,100원*30일
2	상급침실 이용료	2인실*1일*2,000원	2,000원(1일)	60,000원	2,000원*30일 (이용자에 한함)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8%	9%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 (1등급 30일 기준)

구 분		금액 (30일 기준)	금액 (1식/일 기준)	비 고
총 계		2,527,200원	84,240원	84,240원*30일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0%)	2,021,760원	67,392원	84,240원*30일*80%
	요양급여비용(88%)	2,223,936원	74,131원	84,240원*30일*88%
	요양급여비용(92%)	2,325,024원	77,501원	84,240원*30일*92%
본 인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0%)	505,440원	16,848원	84,240원*30일*20%
	요양급여비용(12%)	303,270원	10,109원	84,240원*30일*12%
	요양급여비용(8%)	202,176원	6,739원	84,240원*30일* 8%
본 인 부담비용 (비급여)	식사재료비	243,000원	2,700원	2,700원*3식*30일
	상급침실 이용료 (이용자에 한함)	60,000원	2,000원	2,000원*1일*30일
	의료비 / 약제비	별 도	별 도	별 도
본 인 부담비용 총 계	요양급여비용(20%)	748,440원	24,948원	- 의료비/약제비 별도 - 상급침실 이용료 별도 (이용자에 한함)
	요양급여비용(12%)	546,270원	18,209원	
	요양급여비용(8%)	445,170원	14,839원	

◇ 세부내역 (2등급 30일 기준)

구 분		금액 (30일 기준)	금액 (1식/일 기준)	비 고
총 계		2,344,500원	78,150원	78,150*30일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0%)	1,875,600원	62,520원	78,150원*30일*80%
	요양급여비용(88%)	2,063,160원	68,772원	78,150원*30일*88%
	요양급여비용(92%)	2,156,940원	71,898원	78,150원*30일*92%
본 인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0%)	468,900원	15,630원	78,150원*30일*20%
	요양급여비용(12%)	281,340원	9,378원	78,150원*30일*12%
	요양급여비용(8%)	187,560원	6,252원	78,150원*30일* 8%
본 인 부담비용 (비급여)	식사재료비	243,000원	2,700원	2,700원*3식*30일
	상급침실 이용료 (이용자에 한함)	60,000원	2,000원	2000원*1일*30일
	의료비 / 약제비	별 도	별 도	별 도
본 인 부담비용 총 계	요양급여비용(20%)	711,900원	23,730원	- 의료비/약제비 별도 - 상급침실 이용료 별도 (이용자에 한함)
	요양급여비용(12%)	524,340원	17,478원	
	요양급여비용(8%)	430,560원	14,352원	

◇ 세부내역 (3~5등급 30일 기준)

구 분		금액 (30일 기준)	금액 (1식/일 기준)	비 고
총 계		2,214,000원	78,150원	78,150*30일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0%)	1,771,200원	59,040원	78,150원*30일*80%
	요양급여비용(88%)	1,948,320원	64,944원	78,150원*30일*88%
	요양급여비용(92%)	2,036,880원	67,896원	78,150원*30일*92%
본 인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0%)	442,800원	14,760원	78,150원*30일*20%
	요양급여비용(12%)	265,680원	8,856원	78,150원*30일*12%
	요양급여비용(8%)	177,120원	5,904원	78,150원*30일* 8%
본 인 부담비용 (비급여)	식사재료비	243,000원	2,700원	2,700원*3식*30일
	상급침실 이용료 (이용자에 한함)	60,000원	2,000원	2000원*1일*30일
	의료비 / 약제비	별 도	별 도	별 도
본 인 부담비용 총 계	요양급여비용(20%)	685,800원	22,860원	- 의료비/약제비 별도 - 상급침실 이용료 별도 (이용자에 한함)
	요양급여비용(12%)	508,680원	16,956원	
	요양급여비용(8%)	420,120원	14,004원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따른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 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외출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면회·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 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 ·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

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4년 월 일

※ 첨부서류 : 노인인권지침 1부

□ 지침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이용자(보호자) (인)

(계약자) ‘갑’ 이용자 (인)

‘을’ 시설장 최 현 정

‘병’ 대리인(보호자) (인)